

##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중단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

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취업지원서비스 중단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6. 9.

###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북부지청장



1. 건 명: 취업지원서비스 중단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
2. 근 거: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제6조제1항제1호, 제12조제5항 제29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호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명	생년월일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		송달불능 사유	주소
			예정된 처분의 제목	처분사유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	
이*영	2000. 12. 11.	취업지원서비스 중단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	국민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서비스 중단처분, 3년간 재참여 불가	취업활동계획 미이행 출석통지 2회 이상 불응	○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 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 지원서비스 중단 ○ 종료일로부터 3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사업 재참여 불가	수취인불명	인천시 서구 완정로 156번안길 (마전동) (이하 생략)

4. 공고 기간: 2026. 6. 9.~2026. 6. 23.(15일간)

5. 기타 사항은 인천서부고용복지+센터 국민취업지원팀 박민선(☎ 032-540-2016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